

#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644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14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시의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정특별고문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시정특별고문 위촉,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회의, 활동지원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- 라.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 추가경정예산 반영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9. 2. ~ 9. 7.(5일간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  - 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(1건) 반영

- “관계인”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, 불명확한 용어로 인한 자의적 해석이 우려됨에 따라 명확한 범위 제시 필요

⇒ 불명확하고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는 “관계인” 문구 삭제(안 제7조)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불입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기능)**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(이하 “시정특별고문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1.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
2.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
3.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

**제3조(위촉)** 시정특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
2.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

**제4조(임기)** 시정특별고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해촉)** 시장은 시정특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특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3.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업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6조(회의)**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활동지원)** ① 시정특별고문은 제2조의 자문사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8조(비밀누설 금지 등)** 시정특별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시정특별고문에게 회의참석 수당, 여비,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시정특별고문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, 여비, 활동보상금 등에 필요한 경비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## 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정 특별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## 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대 영